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의 안 포 함 | 제2346호 ~ 제2347호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
| |
|-----------------------|
| 2023. 1. 11.(수) 14:30 |
| 제348회 임시회 제1차 행자위 |

검 토 보 고 서

안건 : 2건(개정 조례안2)



행정자치위원회
전문위원 백 윤 석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346호
- 제출일자 : 2023. 1. 3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기획실장)
- 회부일자 : 2023. 1. 3.

2. 제안이유

-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를 활용한 소통이 증대됨에 따라 군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,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종 행사 운영, 콘텐츠 저작권 등의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확대 (안 제1조)
 - 장성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
- 각종 행사 운영 및 보상 규정 구체화 (안 제5조)
 - 각종 공모전 개최 및 그에 따른 참여자 보상 근거 마련
- 원고료 지급 등 예산의 지원(안 제10조)
 -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 규정 신설

4.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,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종 행사 운영, 콘텐츠 저작권 등의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347호
- 제출일자 : 2023. 1. 3.
- 제출자 : 장성군수(민원봉사과장)
- 회부일자 : 2023. 1. 3.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건축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항 변경 (안 제10조제4항)
 -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조항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
 -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신설
-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면적 변경(안 제51조제1항)
 - 주거용 건축물 면적 85㎡이하 → 주거용 건축물 면적 60㎡이하
-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·운영 계획 신설(안 제53조)
 -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근거 및 업무 내용
-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·운영 계획 신설(안 제54조)
 - 지역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사업 내용

4. 법적근거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조의5
- 「건축법」 제80조, 제87조의2, 제87조의3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건축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2348호 |
|----------|--------|

| |
|-----------------------|
| 2023. 1. 11.(수) 15:00 |
| 제348회 임시회 제1차 산건위 |

검 토 보 고 서

- 안건 : 1건(동의안1)



산업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안광수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348호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건설과장)
- 제출일자 : 2023. 1. 3.
- 회부일자 : 2023. 1. 3.

2. 제안이유

- ‘201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’ 으로 추진한 친환경 농산물판매장이 ‘2018년 농림식품부 마을만들기사업 소득증대사업’ 으로 선정되어 리모델링을 2022년에 완료하였고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」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사용료 면제를 동의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사용수익허가(수의) 내역
 - 대 상 지 : 건물 1동 및 토지 4필지(진원면 선적리 133번지 등)
 - 사용면적 : 건물 277.2㎡, 토지 735㎡
 - 추정가격 : 총 440,426,100원(건물 197,643,600원 토지 242,782,500원)
 - 사 용 자 : 불태산전통두부협동조합
 - 사용기간 : 허가일로부터 5년

○ 사용료 산정 내역

- 440,426,100원 × 50/100 × 1.1 = 24,223,436원(1년)

※월 분납시 : 2,018,620원

- 2021년 총소득 : 71,775천원(2021년 실질소득 1,809천원)

4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(사용료의 감면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제5항제4호(사용료면제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제3항제8호(사용료허가의 방법)
- 「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0조의 2(수익계약으로 사용·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)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, 행정재산인 친환경 농산물판매장을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 리모델링하고 이를 법인에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한 것으로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르면, 균유지인 공유재산을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성군 생산제품을 생산·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법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임.
-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장성군의회 동의의 경우를 얻어야 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됨.

- 불태산전통두부협동조합은 군 생산제품을 생산·전시·판매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사용허가 하고,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